#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0. 11(금) 문화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09. 12

나. 제 안 자 : 제갈원영 의원(대표발의)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김기홍, 박순남, 신동수, 안영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09. 12

라. 상정일자 : 2013. 10. 04

○ 제안설명: 제갈원영 의원

○ 검토보고: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제정 2012. 7. 19., 시행 2013. 1. 1.)에 의거,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사장:

인천광역시장)"가 2013. 1. 31. 설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와 "인천광역시영상위원 회"의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바, 제7조의2를 삭제하여 분과위원 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보다 효율 적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함.

#### 나. 주요내용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와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그러나, 두 위원회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문화예술진홍위원회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설치근거 및 성격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 리법인(사단법인)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심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구성	위원장 포함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사장(시장) 포함 16명의 이사 및 감사로 이사회가 구성		

먼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는 「지방자치법」1)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 성격의위원회임. 반면,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제작 및 영상·문화산업콘텐츠 개발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설립된 비영리법인임. 결국, 자문기관 성격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영상산업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개정조례안에서 두 위원회간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사유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 1)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7조의2 (분과위원회) ① <u>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u>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와 구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 제1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사항
- 2. 제2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4조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안사유와는 달리, 동 조례 제정(1996. 7. 22)이후 2005. 11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제1분과, 제2분과)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이후「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조례」를 제정(2012. 7월)하여 시장이 영상진흥시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조례 개정이후 제2분과위원회는 2006~2010년까지 구성·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구성되지않고 있음.

당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기간(2006~2010년)동안 위원회 개최가 거의 없었던 점,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은 실익이 없어 보이고 입법의실효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는 위원회가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분과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강병수 위원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지?

#### 〈답변〉

#### ○ 문화관광체육국장

- 기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사항을 통합·조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없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신현환·강병수·박순남·김기홍·신동수·제갈원영 위원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6명)

###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u>&lt;삭제&gt;</u>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					
<u>다.</u>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와 구성은 위					
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u>같다.</u>					
1. 제1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					
한 사항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					
한 사항 중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에서 호선하되, 분과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4조 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분과위 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회에 보고하여여 한다.			